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122
----------	-------

발의연월일 : 2026. 1. 16.

발 의 자 : 김재원 · 강준현 · 박정현
황명선 · 한창민 · 서왕진
최혁진 · 황운하 · 손 솔
차규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100분의 35를 과학기술진흥기금 등에 배분(이하 “법정배분”이라 함)하고 남은 금액을 문화·예술 진흥사업 등 공익사업에 배분(이하 “공익배분”이라 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대한 공익배분 방식으로는 그 사용 용도에 제한이 있고 복권수입금 배분 금액이 불확실하여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과 사용 용도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복권수익금의 법정배분 대상에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추가하고 법정배분 비율을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43으로 8%p 상향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배분하도록 하고, 배분금액을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각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재원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6123호),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1호) 및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2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00분의 35”를 “100분의 4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12.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별표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기금 등	용도
12.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각 호 의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권수익금의 배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도 복권수익금을 배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① 매년 복권수익금 가운데 <u>100분의 35</u> 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에 배분하되 그 배분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복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금 등의 자금소요 및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각 기금 등의 배분비율에 대하여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 조정할 수 있다.	① ----- <u>100분의 43</u> ----- ----- ----- ----- ----- ----- ----- ----- ----- ----- -----.
1. ~ 11. (생략)	1. ~ 11. (현행과 같음)
<u><신설></u>	<u>12. 「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예술진흥기금</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과 제4항에 따른 비용 및 경비를 제외한 복권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다만, 제5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복권기금의 비율은 100분의 5 범위	③ ----- ----- ----- ----- ----- ----- ----- -----.

로 한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4. 문화·예술 진흥사업</u>	<u><삭 제></u>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